의안번호	제 호
의 결	2015년 월 일
연 월 일	(제 344 회)

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(대안)

제 안 자	행정문화위원장
제안연월일	2015년 12월 16일

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(대안)

의 안 번 호

제안연월일: 2015. 12. 16.

제 안 자 :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지난 340회 임시회에 제출된 "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"을 시민단체 및 주무부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검토한결과, 제출된 조례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부족하여 심사보류를 하였으며,
- 금번 제344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(12월 15일) 재심사하여 조례의 제명을 「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하고 민간부분 공익신고를 규정한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과 공공부분의 공익신고를 규정한 「무패방지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동조례를 제출하고자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조례의 제명을 「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하여 민간부 분 공익신고를 규정한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과 공공부분의 공익신고를 규정한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통합하고.
- 공익제보자 보호·지원위원화를 설치하여 공익제보에 대해 심의·지문과 공익제보로 인하여 도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구조금,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.

2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「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하여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.
- 나. 공익제보의 정의를 충청북도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상의 공익신고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의 부 패신고로 하는 등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.
- 다. 공익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받지 않을 모인의 권리와 참여를 명시함(안 제3조).
- 라.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 마련 및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의무를 명시함(안 제4조).
- 마. 공익제보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·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(안 제6조~제11조)
- 바. 도자는 공익제보의 접수 및 공익제보지를 보호하도록 함(안 제12조~제15조)
- 아. 구조금 및 보상금.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(안 제16조~제18조)
- 자.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 업을 선정하도록 함(안 제21조)
- 타.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 기업의 지정과 민간기업 등이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~제20조).
- 파.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공익제보자 보 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,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 기관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안 제21조~제22조)
- 하. 도지사는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, 개인, 기업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며, 관련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, 안 제24조).

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(대안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 지원함으로 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공익제보"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과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(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·수사·소송 및 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·소송 등에서 진술·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- 2. "공익제보 조사"란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.
- 3. "공익제보자"란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.
- 4. "내부 공익제보자"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를 말한다.
 - 가. 피제보자인 공공기관, 기업, 법인,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 였던 사람
 - 나. 피제보자인 공공기관, 기업, 법인, 단체 등과 공사·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
- 5. "불이익 조치" 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말한다.
- 6. "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"(이하 "우수기업"이라 한다)이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.
- 7. "공익제보자 보호 환경조성사업" (이하 "환경조성사업" 이라 한다)이란 공 익제보 처리 시스템 및 제보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.
- 8. "공익제보 보조금"이란 도 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

- 제3조(도민의 권리와 참여) ① 충청북도 도민(이하 "도민"이라 한다)은 공익침해 행위와 부패행위, 그 밖의 위법 행위에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제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받지 아니한다.
 - ② 도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 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부패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, 도의 공익제보 시책에 참여한다.
- 제4조(도지사의 의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공정한 공익제 보 조사에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도지사는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도지사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.
- 제5조(도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) 도가 관할하는 기관과 도에 소재한 기업은 직장 내 공익제보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하다.

제2장 공익제보자 보호ㆍ지원위원회

- 제6조(공익제보자 보호·지원위원회 설치) ①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공익제보자 보호·지원위원 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제7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심의ㆍ자문
 - 2. 공익제보자의 보호 · 지원 심의
 - 3. 제15조에 따른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사항의 권고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구조금 및 보상금의 심의
 - 4.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공익제보자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- 5.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
 - 6.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·단체 등과 연계망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
 - 7.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8.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9.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

- 10. 그 밖에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(위원회 구성)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, 이 중 3분의 2는 외부인사 중 민간위원으로 한다.
 -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. 도 감사관은 당연직으로서 부위원장으로 한다.
 -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, 법관, 교육자, 또는 공익제 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제9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하며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서 임시 개최할 수 있다.
 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,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공익제보자 보호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.
 - ⑤ 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 은 5년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 -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제보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 -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 야 한다.
- 제11조(위원의 해촉)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2.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
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4.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5.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
제3장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

- 제12조(공익제보센터의 설치 운영)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센터는 공익제보가 접수 또는 이첩되는 즉시,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조사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.
 - ③ 센터는 공익제보 접수 후 보호 및 지원조치가 필요한 경우,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3조(공익제보의 접수) ① 도민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 또는 부패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.
 - 1. 공익침해행위 또는 부패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·단체·기업 등의 대표 자 또는 사용자
 - 2. 도
 - 3. 수사기관
 - ② 공익제보의 방법은 법 제8조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에 따른다.
- 제14조(공익제보의 처리) ① 도지사는 공익제보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제보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,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 - ③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④ 도지사는 공익제보가 도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제보를 접수하였거나 이첩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.
- 제15조(공익제보자의 보호) ① 도지사는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,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

- 조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② 도지사는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제보자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도지사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제보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.
- ④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나 신고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- 제16조(구조금) ① 공익제보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로 인하여 법 제 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도지사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거나 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③ 도지사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- ④ 공익제보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 - ⑤ 도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.
- 제17조(보상금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도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내부 공익제보자는 도지사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
 - 1.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
 - 2. 과징금(인허가 등의 취소·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 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·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)의 부과

- 3.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
 - 가. 지방세의 부과
 - 나.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
 - 다.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거나 「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」 별표 2의 보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.
- ③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④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 등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도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,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.
- ⑦ 도지사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 금 지급 신청인,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,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인,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⑧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8조(포상금) ① 도지사는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제17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.
 - 1. 공익침해행위 또는 부패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, 형의 선고유예· 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

- 2.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
- 3. 공익침해행위 또는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, 지급대상,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장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

- 제19조(우수 기업의 지정)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도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.
 - 1.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
 - 2. 공익제보 접수 · 처리업무 담당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
 - 3. 공익제보 접수·처리절차 등 시스템 구축
 - 4. 임직원 대상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
 - 5.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
 - 6.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
 -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제20조(우수기업 우대 등) ① 도지사는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
 - ② 도지사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, 소방·환경 등 각종 시설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.
 - ③ 도지시는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, 그 밖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제21조(환경조성사업) ① 도지사는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.
 - ②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- ③ 도지사는 환경조성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22조(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) 도지사는 지역 내 민간기업 등이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.
 - 1. 지역 내 기업, 경제단체,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 · 운영
 - 2. 지역 내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
 - 3.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지원

- 4. 전문가 공개 토론회, 관계자 공동연수 개최 등
- 제23조(표창의 수여) 도지사는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, 개인,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.
- 제24조(민원사무처리의 특례) 도지사는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제2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.